

2002년도에 달라지는 축산정책

구분	2001	2002변경	변경사유
송아지생산안정사업	신청기간 '00.11.1~'01.3.31	신청기간 '02.1.1~'02.5.31	농번기 및 가축방역으로 인한 미참여농가에 대한 참여 기회 확대
한우다산장려금 · 지급대상 · 지급액 신청	-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가입이 되고 3산이상 송아지를 생산하는 한우암소 -시·군이 시·도를 거쳐 농림부에 신청	-송아지 생산안정사업에 가입이 되고 3산이상 송아지를 생산하는 한우암소 · 단, 7월부터는 인공수정에 의하여 송아지를 생산하는 경우에만 해당 -축협조합이 지역본부를 거쳐 농협중앙회에 보고, 농협중앙회가 농림부에 신청	-'01년도 사전예고 사항으로 농가의 충분한 준비를 위해 7월부터 시행 -송아지생산안정사업과 연계추진으로 사업의 효율성 제고
거세지원사업 · 지원대상(한우)	-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계획을 세워 사업을 추진하고 그 계획에 따라 수소를 거세한 자	-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계획을 세워 사업을 추진하고 그 계획에 따라 수소를 거세한 자 · 단, 7월부터는 안정사업 가입 암소가 생산한 수소를 거세하는 경우에만 해당	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확대 도모를 통한 사육기반 유지와 품질고급화 촉진
한우개량사업	-한우개량농가 육성 -한우능력검정 및 정액 생산·공급	-한우개량농가 육성 -한우능력검정 및 정액 생산·공급 -인공수정료 지원(신규)	한우산업종합발전대책의 일환으로 송아지 안정제 가입 암소에 대한 인공수정료 지원
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· 지원내용 지원기준	-수출에 필요한 포장, 선별, 운송비 등의 일부를 수출 물류비로 지원 (신설)	-수출에 필요한 포장, 선별, 운송비 등 물류비용과 해당품목의 수출확대를 위한 수출조성사업 지원 · 수출조성사업은 예산액의 4%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-축산물: 포장상자 제작비의 40%범위내 지원(단, 신규수출시장 개척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포장재비 및 운송비 등 지원검토)	-수출판매촉진 지원과 관련된 부대업무 처리비용 최소화 인정 -축산물중 수출유망품목의 수출확대 촉진
축산물품질향상 · 원료돈 구매자금 지원	(신규)	-대상자: 양돈농가등과 계통출하계약을 체결한 육가공업체	신규사업

구분	2001	2002변경	변경사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육가공업체 시설지원 • 규격돼지 출하 촉진자금 	(신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자금회전을 8회전 이상업체 -사업물량 및 금액 : 315천두 (392억원) -지원조건 : 연리5%, 1년거치 일시상환 -대상자 : 고품질·위생적인 돈육생산을 위해 시설 현대화를 기하고자 하는자 -사업물량 및 금액 : 22개소, 28,500백만원(용자 200억원) -지원조건 : 연리5%,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-대상자 : 2002.1~12월 기간중 동일 수출업체에 반기(6개월)동안 400두 이상 규격돈을 출하한 실적이 있는 개별 농가 및 계열화업체중 신청자 -사업비 : 200억원 -지원조건 : 연리5%, 1년후상환 	
<p>축산물유통개선지원사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도축·도매시설 -도축장시설현대화사업 -축산위생시설 및 컨설팅 지원 -축산물물류표준화사업 · 가공판매시설 -계란집하장설치 및 계란등급시설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기존도축장 3개소이상 통폐합 -컨설팅 지원비율 보조 70%, 자담30% <p>(신규)</p> <p>(신규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기존도축장 2~3개소 이상 통폐합 -보조50%, 자담 50% -축산물부분육가공장에 대한 포장자재비 등 지원 -사업대상자 · 계란집하장 : 대규모 산란계농가, 양계축협 등 생산자단체 · 계란등급시설 : 집하장을 설치하고 등급을 받고자 하는자 -사업비 : 10,150백만원 -지원조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대상자 요건완화로 실효성을 높임 -보조 지원비율 축소 -부분육상장표준규격제정 고시에 따른 사업활성화

구 분	2001	2002변경	변경사유
		· 시설 : 연리5%, 5년거치 10년상환 · 운영 : 연리5%, 1년후 상환	
· 식육소매유통시설 -지원액	-한우고기전문판매점 지원 -식육판매모범업소 지원 -한우전문점 : 140~1,050백만원 -모범업소 : 14백만원	-식육소매유통시설로 통합 -시설개선 : 35백만원 -시설설치 : 140~1,050백만원	WTO패널결과에 따라 한우고기 전문판매점 지원 종료
· 돈가스외식프랜차이즈설치사업 · 축산물종합처리장·공판장 및 도매시장 운영활성화 사업	-지원대상 : 농협, 도드람유통 -지원대상 : LPC, 도매시장, 공판장 -지원조건 : 연5~8%, 1년후 상환	-지원대상 : 생산자단체 및 돈가스 가공시설을 갖춘자로서 국내산 돼지고기 중안·등심을 이용하여 돈가스를 가공하여 판매코자 하는 자 -지원대상 : LPC, 오리도축·가공장, 도매시장, 공판장 -지원조건 : 연5~5.5%, 1년후 상환	-지원대상자 확대 -신규사업 지원대상 확대
축산물등급판정	-등급거래지역의 확대 -쇠고기 등급별 구분판매 의무지역 확대	-쇠고기 등급별 구분판매 정착 -계란등급제 시범 실시 -닭고기등급제 사전준비	
가축공제	-소(생우3개월이상), 말(중빈말), 돼지에 대한 공제 실시 · 시가의 80%까지 지원	-돼지의 보상범위를 질병에 의한 손해까지 확대(법정 전염병 제외)	-돼지사육농가의 안정적인 양육기반 조성
식육판매업소의 식육거래기록 의무제 시행 계란 위생검사 실시	-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매입시 장부기록 의무 없음	-식육매입시 구입량, 부위, 등급, 원산지 등을 기록하고 그 장부를 1년간 보관 -축산물의 범주에 식용란을 포함하여 계란위생검사 실시	-식육의 원산지위반방지 및 위해요인 발생시 리콜 용이 -계란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관리 가능
HACCP미시행도축장 처벌강화	-미시행도축장 : 과태료 30만원 처분	-미시행도축장 : 과태료 처분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	-미적용작업장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근거조항 신설로 HACCP의 강력한 시행을 통한 위생수준 개선